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86
----------	------

발의연월일 : 2016. 11. 11.

발의자 : 김해영 · 강병원 · 권미혁

김상희 · 도종환 · 박광온

박완주 · 서영교 · 윤관석

전혜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p> <p>1. (생 략)</p> <p>2. <u>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u></p> <p>3. ~ 7. (생 략)</p>	<p>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견인</u></p> <p>3. ~ 7. (현행과 같음)</p>